

## 건축법 시행규칙중 개정령

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976년 7월24일 건설부장관

제 1 조 제 1 항중 “(2)난내지 (12)난중”을 “(2)난내지 (13)난중”으로 하고, 동조 동항의 표 후단에 (13)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건축물의종류	도서의종류	축 척	표시하여야할사항
(13)	토지의 형질변경 을 하여야 할때	토지의 지형 평면도 종·횡단면도및구조 물 상세도	임 의	축척 및 종·횡단선 축척·단면상세 (인접) 토지를 포함한다.

별지 제 1 호 서식(정본) 및 별지 제 1 ~ 2 호 서식(정본)중 “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”를 “건축법 제 5 조 및 도시 계획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”로 한다.

별지 제 1 호 서식(부본) 및 별지 제 1 ~ 2 호 서식(부본)중 “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을 허가함”을 “건축법 제 5 조 및 도시계획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함”으로 한다.

별지 제 6 호서식 및 별지 제 6 ~ 2 호 서식중 “건축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”를 “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를 완료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”로 한다.

별지 제 7 호 서식 및 제 7 ~ 2 호 서식중 “건축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함”을 “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공사를 검사한 결과 건축법의 규정 및 토지의 형질·변경허가 내용에 적합함을 증명함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